

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

1 지원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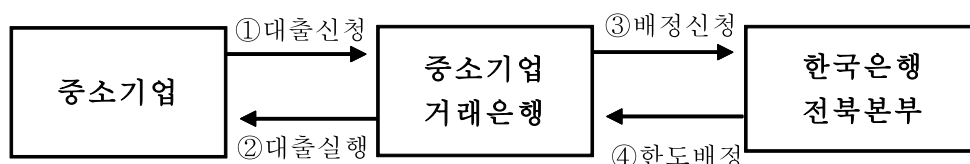
- 한국은행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자금조달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중소기업 진흥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운용
 -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동 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지역내 금융기관에 공급

2 지원 한도

- 총 지원한도 : 2,318억원
 - 전략지원한도(959.5억원) : 전라북도 지정 지역주력산업,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, 탄소산업, 관광·MICE 산업, 농림수산업 등
 - 특별지원한도(399억원) : 음식·숙박업, 도소매업, 여행업, 운수업, 여가업 등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종,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에 따른 피해업체 등
 - 일반지원한도(959.5억원) :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, 혁신기업 등

3 지원 방식

- 중소기업 거래은행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대출한 경우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동 대출 취급액의 50%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모점별로 한도 배정



o 지원대상 업체* :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정한 지원대상 중소기업

* 보다 자세한 사항은 <별표 1> 「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」 참조

o 지원대상 대출취급실적 :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 및
만기 5년 이내의 시설자금대출

o 지원비율 :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50%이내

o 업체당 지원한도 : 전략지원부문은 20억원 이내
특별지원부문은 10억원 이내
일반지원부문은 10억원 이내

o 대출 신청 : 각 은행 영업점

<문의처> 한국은행 전북본부 업무팀(063-250-4105) 또는 각 은행 영업점

<별표1>

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

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정기준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,KSIC) ¹⁾
A2	벤처기업	일반	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 (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
A3	혁신기업	일반	-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신기술인증(NET) 또는 신제품인증(NEP) 보유기업 (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 -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(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 -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-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평가전문기관이 발급한 기술평가인증서 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사 및 은행 자체TCB 역량 심의위원회가 발급한 기술신용평가서(기술등급 양호 이상)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(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
A4	녹색기업	일반	-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(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) 부여 제품 생산기업 -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-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기업 -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기업 -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Green-Biz 선정기업
A6	추천기업 ²⁾	일반	- 전북특별자치도청이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-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,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 영위기업 -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 대출을 위해 보증서를 발급한 중소기업
A7	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	일반	- <별표1-1>의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
A8	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	전략	-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의 업체 ○ <별표1-2>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○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▪ 고용노동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청이 선정한 고용 관련 우수기업 (대출취급일 기준 2년 이내) ▪ 전북특별자치도청의 고용지원사업에 참가하여 지원받은 기업 (대출취급일 기준 2년 이내) ▪ 대출취급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상용근로자수가 전년말 또는 전년 동기대비 3인 이상 증가하고 고용증가율이 10% 이상인 기업 ○ 탄소산업 영위기업 ▪ 탄소산업 관련 영위기업으로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(전북특별자치도청 포함)으로부터 확인서를 발부받은 중소기업 ▪ 화학섬유 직물직조업(13213) 중 탄소섬유 직물제조 해당기업 ▪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(20119) 중 콜타르피치, 석탄화합물 제조 등 해당기업 ▪ 탄소섬유 제조업(23995) ▪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(28902)중 탄소흑연제품 해당기업

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정기준
A8	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	전략	○ 관광·MICE산업 영위기업 ▪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(카지노업 제외) ▪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 사업체 및 자동차대여사업체(49232, 76110) ▪ 관광기념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 ▪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(73902) ▪ 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(75992, 가정행사 및 결혼식행사대행 제외) ▪ 공연시설 운영업(90110) ▪ 공연 기획업(90191) ▪ 박물관 운영업(90221)
A9	전입기업	일반	- 타 지역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A10	수출관련기업	일반	-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- 최근 연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의 10% 이상을 수출한 기업
A11	소재·부품 생산기업	일반	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전문기업확인서 또는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제출한 기업
A13	농림수산업 관련기업	전략	-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의 업체 ○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,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~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(농림축산업자·농어업법인 포함) ○ 농생명산업 영위기업 ▪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업체 ▪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업체 ▪ 기능성식품 제조업체 · 장류 제조업(10743) · 인삼식품 제조업(10795) ·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(10796) · 건강기능식품 제조업(10797) ·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입주업체 ·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선정 전략기업 (지정연도 이후 3년간 유효) ▪ 농림수산물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(70112)
		일반	-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의 업체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어업회사법인
A14	명절 및 재해자금 등	일반	- 계절적 자금수요, 재해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 지원하는 기업
A15	기타 지원기업	일반	- 여성기업 :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정한 바에 따라 <u>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</u>이 확인한 기업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 영위기업 - 사회적기업 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중 영리법인

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정기준
A16	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	특별	-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○ 숙박 및 음식점업(55~56. 다만, 주점업(5621)은 제외) ○ 도매 및 소매업(45~47) ○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(752) ○ 운수 및 창고업(49~52) ○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90~91. 다만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), 무도장 운영업 (91291)은 제외) 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 관련 2018년 2월 전북특별자치도청의 지방세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대상 선정업체 ② 2017년 이후 한국지엠 군산공장 또는 ①에 따른 업체에 대해 납품 또는 용역제공 실적이 있는 업체 ③ 2016년 이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 납품 또는 용역제공 실적이 있는 업체 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기징후 단계가 주의 또는 심각으로 결정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(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서 발급)

- 주: 1) 인증 또는 계약 등 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
- 2)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, 한국은행 전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3)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

지역특화산업 해당업종

산업명	해 당 업 종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,KSIC)
전북지역 특산물 제조기업	- 한지, 합죽선, 홍삼, 한방, 죽염, 허브, 목기, 장류, 복분자
전북지역 특화산업	[음식료품] -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(10121) -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가공업(가금류제외)(10122) -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(가금류제외)(10129) -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(10219) - 김치류 제조업(10301) -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(10302) -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(10501) -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(10502) -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(10713) - 면류,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(10730) -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(11209) -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(17223) [섬유의복제품] -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(132) - 봉제의복 제조업(141) -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(144) [석재] - 석제품 제조업(2391) [귀금속] -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(3311)
향토음식점	-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향토음식점
제조관련 서비스업	- 폐기물 수집 운반업(381) - 폐기물 처리업(382)
물류산업	- 도로화물 운송업(4930) - 외항화물 운송업(50112) - 내항화물 운송업(50122) - 기타 해상 운송업(50130) -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(50201) - 항만내 여객 운송업(50202) -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(50209) - 수상 화물 취급업(52942) - 냉장 및 냉동 창고업(52102)
문화영상산업	- 기록매체복제업(1820) - 영상게임기 제조업(33402) -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5821) -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(5911) - 영화관 운영업(59141) -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(901) -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(75121) 중 연극, 영화 단역 배우 공급 운영업체

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력산업 해당업종

산업명	해 당 업 종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,KSIC)
기계산업	- 내연기관 제조업(29111) -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(29119) - 유압기기 제조업(29120) - 탭,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(29133) - 산업용 오븐,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(29150) -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(29171) -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(29161) - 컨베이어장치 제조업(29163) -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(29169) -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(29199) -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(29210) - 전자용용 절삭기계 제조업(29221) -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(29222) -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(29223) -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(29224) -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(29229) -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(29230) - 건설 및 채광용 기계·장비 제조업(29241) - 산업용 섬유세척, 염색,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(29261) - 기타 섬유,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(29269) -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(29272) - 산업용 로봇 제조업(29280) -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(29291) - 고무,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(29292) -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(29293) - 주형 및 금형 제조업(29294) -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(29299) - 유인 항공기,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(31311) - 무인 항공기,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(31312)
자동차 및 부품제조	-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)
조선산업	- 레이더,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(27211) - 선박 및 보트 건조업(311)
인쇄전자, LED	-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(20413) -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(26111) -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(26112) -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(26121) -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(26129) - 액정표시장치 제조업(26211) -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(26212) -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(26219) - 인쇄회로기판 적층판 제조업(26221) -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(26222) -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(26223) -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(26224) - 전자카드 제조업(26293) - 전자감지장치 제조업(26295)

산업명	해 당 업 종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,KSIC)
인쇄전자, LED	-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(26299) -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(26322) - 물질 검사,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(27213) -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(27215) -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(27216) -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(28113) -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(28422) -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(28423) -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(29271)
방사선융합기술(RFT)	- 의약용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(21101) -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 제품 제조업(21300) - 방사선 장치 제조업(27111) - 치과용 기기 제조업(27191) - 전자기 측정,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(27212) - 기타 측정, 시험, 항해,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(27219) -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(27193) -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(27301)
신재생에너지	- 알루미늄 압연,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(24222) -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(25113) -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(25114) - 분말야금제품 제조업(25911) -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(28111) - 변압기 제조업(28112) -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(28114) -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(28119) - 전기회로 개폐, 보호 장치 제조업(28121) -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(28122) -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(28123) - 축전지 제조업(28202) - 구름베어링 제조업(29141) -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(29142)
뿌리산업	-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(25912) -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(25913) -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(25914) - 금속 열처리업(25921) - 도금업(25922) -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(25923) -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(25924) -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(25929)

<별표2>

전북본부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¹⁾
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,KSIC
전문 소매업	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
운송관련 서비스업	52915 주차장 운영업
주 점 업	5621 주점업
금융관련업	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
부동산업	68 부동산업
전문 서비스업	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
교육 서비스업	855 일반 교습학원
보 건 업	86 보건업
오락관련 서비스업	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

주: 1)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